

업 무 협 약 서

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과 특허청은 캐릭터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“진흥원”과 “특허청”은 캐릭터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산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식재산권을 통한 캐릭터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제2조(협약의 내용) “진흥원”과 “특허청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, 협력사업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진 흥 원 은

1. 캐릭터관련 행사 및 세미나 개최 시에 지식재산권 창출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, 세미나 및 상담 등을 적극 실시한다.
2. 캐릭터 보호를 위하여 특허청이 추진하는 디자인제도 개선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, 캐릭터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허청에 전달한다.
3. 진흥원은 캐릭터관련 상품 DB 구축 등 캐릭터에 관한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함으로써 모방캐릭터의 디자인등록 방지에 협조한다.

특허청은

1. 진흥원에서 캐릭터관련 지식재산권 교육, 세미나 및 상담 등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.
2. 진흥원을 통하여 캐릭터관련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을 위한 캐릭터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한다.
3.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캐릭터관련 상품 DB를 디자인 심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모방캐릭터의 디자인등록 방지에 노력한다.

양 기관은

1. 캐릭터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 및 활용을 통하여 국내 캐릭터 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.
2. 심사위원 위촉,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상호 인적 교류 및 지원을 확대한다.
3. 협력사업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3조(효력 및 유효기간)

1. 본 업무협약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, 그 유효기간은 24개월로 하되, 제휴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호간에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으면 12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2. 본 업무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.

제4조(기타사항)

본 업무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서의 개정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상호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2년 7월 18일



한국콘텐츠진흥원

한국콘텐츠진흥원
원 장 홍 상 표

홍 상 표



특허청

특 허 청
청 장 김 호 원

김 호 원